

학생생활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예술대학교(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 학생으로서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 정규과정 학생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학생증

제3조(교부) 학생은 입학 즉시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제4조(제시) ① 학생은 교내외에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교직원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증을 휴대·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는 학교 시설의 출입 또는 실험실습 기기 대여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대여 금지) 학생은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유치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반납) 학생증은 졸업, 제적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재발급) 학생증을 분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 3 장 학생자치활동

제8조(학생자치활동의 원칙) ①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고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과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술연구를 위하여 학생회를 두며, 각종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결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우리 대학 재학생은 학생회 회원이 되며 단체에 가입여부는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다.

③ 학생은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수업 및 연구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④ 단체에는 지도교수를 둔다.

⑤ 단체가 사회봉사활동 또는 장학 이념의 구현에 있어 그 활동의 내용 및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지원 또는 사회봉사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학생회 및 단체의 조직 및 운영) ① 학생회 및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회칙은 학생 스스로 정하되 법령과 학칙 및 우리대학의 제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② 우리대학 내 학생 단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1. 종교(기독교) 및 봉사
2. 학술 연구 및 예술 활동
3. 체육 및 친교
4. 취업 및 창업

제10조(단체의 승인) ① 우리대학 내의 단체 설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체구성원의 자격이 하나의 학과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체 승인 신청서 : 단체의 목적 명시
2. 지도교수 승낙서
3. 임원 및 회원 명단
4. 활동계획서

② 학생 단체의 존속 기간은 등록된 당해 학년도에 국한되며, 학년도가 바뀌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임원의 자격) 학생회 및 단체의 임원은 선출일 기준으로 재학생으로서 형사처벌 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소속 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제12조(재정) ①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자치회비로 충당하되 총학생회 등 중앙자치회는 예산사용에 대해 학생처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② 단체의 운영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학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 4 장 행 사 및 홍 보 물 게 시

제13조(행사 신청) ① 학생이 교내외에서 행사를 갖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사전에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사의 성격이 하나의 학과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내 행사 : 7일 전
2. 교외 행사 : 10일 전
3. 타 대학과의 공동 행사: 1개월 전

② 교외에서 진행되는 단체 행사의 경우, [별표1] 양식의 ‘학과 단체 행사 계획서와 보고

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학과장은 매 학기 해당 계획서와 보고서를 학생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물 사용) ① 학생 또는 학생 단체가 학교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학교 시설물을 불법 사용하거나 점거, 대여 및 불법시설물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학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홍보물 등의 게시 또는 배포) 학생회, 단체 또는 학생이 교내에서 홍보물(현수막 포함) 등을 게시 또는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처 또는 행정지원처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제16조(홍보물의 게시 기간 등) 홍보물의 게시 기간은 행사 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종료일 다음 날까지로 하며 홍보물을 게시한 자는 게시기간 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1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